

	전임교원의전공전환지원에 관한 규정	규정번호	3-3-12
		제정일자	2015.03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1차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전임교원의 전공전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 및 대상) ① 전공전환지원은 현 소속과에서 타과로의 전환과 학과 신설 및 폐합에 따른 전환을 포함하여 이를 희망하는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전공전환 신청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전공전환을 제한한다.

1. 퇴직 잔여기간이 10년 미만인 자
2. 전공전환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

③ 학과소속변경은 전과 교원이 학문분야의 유사성이 높거나 학과 소속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학과로 전과를 의미한다.

제3조(전공전환 신청) ① 전공전환 희망교원은 전공전환신청서[별표1]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교무입학처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전공전환신청일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전공전환 심사결정) ① 전공전환에 관한 심사는 교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실시한다.

② 위원회는 전공전환 신청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에 전공전환적합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전공전환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.

③ 전공전환 대상자 결정시 결과를 10일 이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전공전환지원 기간) 전공전환에 따른 학위과정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(전공전환과정중인자 처우) ① 전공전환과정중인자의 책임시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전공전환과정중인자는 전공전환기간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2년 이내로 휴직을 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동안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.

③ 전공전환과정중인자에게 학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, 2년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전공전환자 의무) ① 전공전환자는 해당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
② 전공전환자는 전환기간 중 매학기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교무입학처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전공전환자는 전공전환 종료일까지 학위취득증명서, 최종결과 보고서 및 해당 학과 발전 계획서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전공전환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체 없이 교무입학처장에게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전공전환을 사유로 휴직한 교원이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 지원받은 전공전환과 관련된 학비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타) 전공전환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확정된 전공전환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